

수원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19나8212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19나821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2 선고 2017가단51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피고, 피항소인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변론 종결2021. 3. 16.

판결 선고2021. 4. 1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2. 선고 2017가단51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M, L, N, O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2012. 12.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D에게, 피고 B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2. 12. 28.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과 L 등 사이의 2012. 12. 28.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의 7), 8)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7)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2769호 사건에서 D와 L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2. 12. 5.자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중략)

결정사항1) 3. D는 L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1. 5. 18. 매매가 원인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제3항과 같이 D가 L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됨을 확인한다.]

5. L 등은 D에게, D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6. D는 L 등에게 돈 230,000,000(이억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7. L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된 D의 L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금전 지급 의무와 L 등의 D에 대한 서류 교부와 경매 신청 취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중략)

8) 채무 초과 상태였던 D는 2013. 2. 21. 이 사건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 등 앞으로 2001.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 등은 피고 B 앞으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인 L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각 가압류, 압류 등 등기도 같은 날 모두 직권말소되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빌라의 소유자로서 피고 C 등 위 빌라의 소유자들과 함께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6. 1.경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 등은 피고들 앞으로 2012.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 등과 관련하여 D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6년경 형사고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피고 C 앞으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사해행위의 대상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초 채무자인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2. 12. 28.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수익자인 L 등과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2012. 12. 28.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1175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L 등과 피고들 사이의 2012. 12. 28.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D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로서(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L 등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L 등과 D 사이에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2769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1. 3. 10. 그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서면의 제출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피고들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D에서 L 등으로(혹은 L 등에서 피고들로) 이전된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뿐만이 아니라 금전 지급, 경매신청 취하 등 다양한 이행청구권을 형성하는 각 조항의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되어 있어 이 중 일부에 관하여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D는 원래 L 등에 대하여 2002가단35424호 조정조항에 따라 조정금 4억 7,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혹은 대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L 등에게 2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위 2002가단35424호 조정에 따른 채무를 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L 등에게 이전되어 적극재산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소극재산인 L 등에 대한 4억 7,500만 원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므로 D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구한 종전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정하경

판사박선민

1) 결정사항에 채무자 D는 '원고'로, L 등은 '피고와 선정자들'로 각 기재되어 있다.